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39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 안도걸 · 김영진 · 조인철

양부남 • 한병도 • 김종민

전진숙 · 민형배 · 박민규

서삼석 · 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공장 신·증설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취 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 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 전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전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 행과 같음) 략)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 ·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 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 -----2030년 12월 3 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 1일-----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 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 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